



제333회 임시회

2014.07.21.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07월 07일

○ 회부일자: 2014년 07월 09일

3. 제안이유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및 변경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과학직업교육과	건물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4,630.0	4,043,588
	토지	창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 변경(취소)	△39,259.0	△1,000,000
체육보건급식과	건물	충북체육고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	5,100.0	10,806,750
시 설 과	건물	보은자영고 본관교사 개축	2,803.0	6,548,000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분평초 다목적교실 증축	1,127.0	2,190,468
	건물	남이초 다목적교실 증축	880.0	2,435,617
	토지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토지 매입	643.0	280,000
	건물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추가)	338.0	1,601,877
충주교육지원청	건물	오창중 교실 증축	5,115.0	8,932,629
	건물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6,165.0	12,750,000
합 계		(10건)	△12,458.0	48,588,929

①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 재산위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산145-21번지 외 10필지
- 신축면적: 건물 4,630m²
- 취득금액: 4,043,588천원
- 취득사유: 당초 보은 산외면 보은자영고 목장 부지에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이전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현재 청주농고 통합목장 중 미편입 부지에 축사, 현장교실 등을 이전 신축하려는 것임

②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변경(취소)

- 재산위치: 보은군 산외면 중터리 154-1번지 외 19필지
- 변경면적: 토지 △39,259m²
- 변경금액: △1,000,000천원
- 사 유: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의 초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산외면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토지 매입 계획 변경(취소)

※ 2012.11.30.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의결(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

- 재산위치: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44번지
- 신축면적: 5,100m²
- 취득금액: 10,806,750천원
- 사 유: 충북체육고 이전에 따른 체조, 태권도, 우슈, 양궁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인 종합훈련장 신축

④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 재산위치: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번지
- 개축면적: 건물 2,803m²
- 취득금액: 6,458,000천원

- 사 유: 2003년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본관 교사를 시설노후 및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 후 개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⑤ 분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증축위치: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 1198번지
- 증축면적: 1,127m²
- 취득금액: 2,190,468천원
- 사 유: 체육교과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⑥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증축위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 증축면적: 880m²
- 취득금액: 2,435,617천원
- 사 유: 체육교과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⑦ 올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추가)

- 증축위치: 청주시 상당구 올량동 581-6번지
 - 매입부지: 토지 643m²(증 643m²)
 - 증축면적: 건물 1,795m²(기정 1,457m², 증338m²)
 - 취득금액: 4,655,023천원(부지 280,000천원, 건물 4,375,023천원)
 - 기정 2,773,146천원(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 금회 1,881,877천원(부지 280,000천원, 건물 1,601,877천원)
 - 사 유: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에 의한 가감속차로 설치 부지 매입과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부대공사 증가에 따른 증축 변경
- ※ 2013.12.11.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의결(2013. 제4차 변경계획)

⑧ 오창중학교 교실 증축

- 설립위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151-4번지
- 신축면적: 5,115m²

- 취득금액: 8,932,629천원
- 사 유: 오창제2산업단지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일반교실 24실 및 다목적실 등) 증축

⑨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 신축위치: 충주시 교현동 681-2번지 외 2필지
- 신축면적: 건물 6,165㎡(지하주차장 1,020㎡ 포함)
- 취득금액: 12,750,000천원
- 사 유: 노후된 현 충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5. 검토의견

본 관리계획안은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및 충북체육고 합동훈련장 신축, 교사 신·증축,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과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것으로,

- ①~②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은 2012.11.28. 제 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54-1번지 외 19필지로 이전이 의결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전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통합목장 잔여부지인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145-21 부지에 축사 등 필요 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하려는 것으로, ① 당초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보은군 산외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축사시설 설치 허가가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와 관련 지역주민의 반대를 예상하여 여론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를 이행하였는지 등 계획의 취소에 이르게 한 원인 설명이 필요함 ② 이번에 변경하려는 부지는 현재 청주농고 통합목장 부지이긴 하나, 축사의 확장 등으로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와 합의가 선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③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은 오는 9월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44번지로 이전하는 충북체육고등학교에 1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체조, 태권도, 우슈, 양궁 등의 합동 훈련장을 신축하여 전략 종목 우수선수 육성과 전국단위 우수선수 영입 등 경기력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④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은 1968년 최초 건축되어 46년이 경과하면서 여러차례 증축을 거쳐 사용된 노후 건물로, 2003년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개축이 불가피하나, 공사기간 수업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⑤~⑥ **분평초등학교 및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다목적 교실이 없어 우천시 체육교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입학식 등 실내 행사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공동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⑦ **율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추가)**은 다목적교실 증축에 대한 지자체(청주시)의 대응투자비 지원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청주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시 의결사항인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및 부대공사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⑧ **오창중학교 교실증축**은 오창 제2산업단지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증축으로 일반교실 24실과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게 되며, 전체 예산의 75.7%(6,764,231천원)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⑨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은 1971년 건축된 건물로 40년 이상 경과되어 낡고 협소한 교육지원청 청사를 충주시 교현동 681-2번지(국원고등학교 유희 부지)로 신축 이전하려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내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교육부 투융자심사위원회로부터 적정관정을 받은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발 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